



즉시 배포용: 2018 년 2 월 1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에 대한 30 일 개정안을 구체화**

*개정안은 선택적 고용주 기반 시스템을 통해 주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es, SALT)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자선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기금을 창설하며 뉴욕주를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

*뉴욕주 전역의 사전 투표에 자금을 지원하고 아동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경찰관과 구금자 사이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며 펜타닐 위기에 대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납세자를 연방세 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비롯하여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에 대한 30 일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선택적 고용주 보상비용 세금(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Tax, ECET) 시스템을 창설하는 법안을 포함하여 참여 고용주가 직원을 연방세 인상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선 기부금을 받는 두 가지의 새로운 기금을 창설하여, 납세자들이 공제금을 항목별로 작성하고 연방세로부터 이러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개정안은 주 납세자들이 연방세 인상으로 인한 15억 달러 이상의 주세를 겪지 않도록 주세법을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은 뉴욕 주민들을 워싱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뉴욕주를 진보시키기 위한 우리의 대담하고 진보적인 어젠다에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한 후, 저는 우리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연방 경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예산 개정안으로 더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 개정안에 관한 법안 및 서술은 뉴욕주 예산국(Division of the Budge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뉴욕 납세자를 연방세 개혁으로부터 보호:** 제안된 세금 개혁 요약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개정안이 포함된 구체적인 법안은 다음 조치를 통해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 **새로운 고용주 보상비용 세금(ECET) 시스템 창설:**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주 보상비용 세금(ECET)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고용주는 직원당 40,000 달러를 초과한 모든 연간 급여액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이상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진보적인 개인 소득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고용주 보상비용 세금(ECET)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 공제는 임금에서 떼는 개인 소득세를 삭감하여 고용주 보상비용 세금(ECET)의 대상이 되는 주세 신고자들의 실수령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전체적으로 고용주에게 직원의 연방세를 줄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의 세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고용주가 2019년 과세연도의 대체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첫 연간 선거 기한은 2018년 10월 1일이 됩니다. 참여 고용주를 위해, 40,000 달러 이상 임금에 대한 새로운 급여세의 3년간 단계적 도입은 첫 번째 해에 1.5%, 두 번째 해에 3%, 세 번째 해에 5%를 포함할 것입니다.
- **세금 공제가 가능한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선택권 확대:**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 주 정부가 운영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자선기금을 창설합니다. 납세자는 공제금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이러한 자선 기부금을 연방 및 주세 환급 공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한 모든 납세자는 기부가 이루어진 후 과세 연도 기부금의 85%에 상당하는 주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교육청, 카운티, 타운, 도시 및 마을에 교육, 의료 및 기타 자선 목적을 위한 자선기금의 창설을 허가합니다. 이러한 기금에 기부하면 (지방세 공제를 통해) 기부금의 95%에 상당하는 지방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 이 주세법은 연방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필요 시 연방세 인상으로만 초래되는 15억 달러 이상의 주세 인상을 막기 위해 주세법을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연방세 개혁은 주 및 지방세(SALT)에 대한 항목별 공제금을 10,000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상한선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결과 뉴욕 납세자는 이 상한선의 소득 흐름(flow through)부터 주 소득세 환급까지 포함한 4억 4,100만 달러의 주세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타 연방 공제 변경 사항으로부터 분리하여 주 납세자가 2020 회계연도(Fiscal Year 2020)부터 연간 2억 6,900만 달러를

절약하도록 만듭니다. 이 30일 개정안은 또한 개인 세금 신고자에 대한 주 표준 공제금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개인 세금 신고자는 주 표준 공제금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뉴욕 납세자는 2020 회계연도(Fiscal Year 2020)부터 연간 8억 4,000만 달러의 주세 인상 영향 받게 될 것입니다.

#### **단기 픽스 뉴욕시 자문단(Fix NYC Panel) 권고안 추진:**

다음의 단기 픽스 뉴욕시 자문단(Fix NYC) 권고안은 즉각적인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 협상이 계속되는 도중 추가 자문단 권고안은 의회와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 도로를 막고 교통 흐름을 무너뜨리는 교통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뉴욕시에 맨해튼 60번가 남쪽의 교차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차로 내 정체 시 진입 금지(block the box)” 교통 위반 수칙을 시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허가.
-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맨해튼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통근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및 투어버스와 관련된 운영, 규제, 감독, 허가, 안전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
- 픽스 뉴욕시 자문단(Fix NYC Panel)에, 확립된 지리적 영역에서 시작 혹은 종료되는 여행에 대한 추가 요금을 도입할 목적으로 택시 및 임대 차량에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 장비와 관련하여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협회(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LC)에 권고안을 제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협회(TLC)에 이 목적에 대한 일정한 기술 및 표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
- 픽스 뉴욕시 자문단(Fix NYC Panel)에 남용 및 오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뉴욕시의 현수막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정할 것인지에 관한 권고안을 제기하도록 지시 구체적으로, 자문단은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디자인, 발행 또는 재발행 기준, 강제 및 책임 조치 그리고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고 관련 시 기관에 권고안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 권고안을 참작한 규칙 및 법규가 반포될 것입니다.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아동에게 독감 예방접종 제공:** 법안은 약사에게 2~18세 아동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제 176호를 성문화하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면역제를 투여하는 약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교육법 조항을 영구적으로 정지합니다.

**성범죄자로부터 아동 보호:** 성범죄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 근처를 지나거나 인근에서 주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 가족이 함께 사는 임시 주택, 긴급 피난 주택 또는 대피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커미셔너에게 뉴욕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학교 목록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보호 관찰 및 가석방 부서에 해당 목록을 배포하여 성범죄자가 학교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뉴욕주 사전 투표에 자금 지원:** 뉴욕 카운티가 선거일을 앞두고 12 일 동안 사전 투표를 제안할 수 있도록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 중 대략 700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법안은 모든 카운티에 선거일을 앞두고 12 일 동안 주민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권자들은 평일에 최소 8 시간, 주말에는 5 시간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는 주민 50,000 명당 1 개의 사전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양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사전 투표소의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합성 마리화나 (K2) 판매 금지:** 뉴욕주 규제 물질 목록에 36 종의 다양한 화학 화합물을 추가합니다. 일반적으로 K2 로 지칭되는 36 종의 합성 마약은 이미 연방 정부의 규제 물질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만, 뉴욕주 특정 카운티에서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로 뉴욕 카운티의 모든 마약 제조업자와 판매자들이 동일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펜타닐 위험에 대응:** 새로운 펜타닐 유사 약물을 뉴욕주 규제 약물 목록에 추가하고, 연방 정부 규제 목록에 추가된 모든 새로운 약물을 뉴욕주 규제 약물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에게 부여합니다.

**의사의 불법 행위 단속:** 의료 행위와 관련된 중죄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의료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기소된 의사의 자택, 사무실, 소지품에 대한 수색 영장을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부(Health) 커미셔너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안으로 관련 문서 제공 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강화:** 법안은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을 비롯한 다른 법 집행기관들에 부여하는 권한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권한을 커미셔너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엄격한 고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고용을 처음부터 확실히 막기 위해 교정감독부의 고용 관행을 업데이트합니다.

**경찰관과 수감자 사이의 성적 접촉 금지:** 개인이 기소, 수감, 혹은 구금 도중 성적 접촉에 동의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립합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에 연령 상향과 관련된 건설 지원 허용:** 시설서비스청(DASNY) 금융 채권 및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 보호 관찰 부서, 청소년 주거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건설 서비스를 얻는 권한을 확대하며, 새로운 전문 보안 구금 시설 건설 및/혹은 연령  
상향 시행에 따른 기존 청소년 구금 시설 보강 작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비용은  
1,000 만 달러에서 5,000 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게이 패닉” 혹은 “트랜스 패닉”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개인이 희생된 성 소수자의 성별, 성 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을 인식 혹은 발견하여 공격한  
후 게이 및 트랜스 패닉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현 뉴욕주 법의 허점을  
막아 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